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3. 31

다. 상 정 일 자 : 2005. 4. 15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나.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주요내용

- 기 능 :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건의 (안 제2조)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군수가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구 성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3조)

-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

-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안 제5조)

- 위원의 해촉 :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안 제6조)

- 간사 및 직원 : 각 협의체에 1인의 간사를 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근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회의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처리(안 제8조)
- 의견의 청취 및 공청회 등의 개최 : 필요시 전문가, 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을 개최 (안 제11조, 안 제12조)
- 경비지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에게 수당 등 지급 (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4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임 :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화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화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5. 공익단체 대표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되,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군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